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01

발의연월일: 2023. 1. 30.

발 의 자:한기호·최영희·김희곤

성일종 · 최춘식 · 엄태영

최승재 · 김영선 · 하태경

이헌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활용 등에 따라 전장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쟁의 양상도 정보화전에서 지능화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세계 각 국에서 나타나고 있음.

최근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상용드론 및 전투로봇, 상용 위성 통신망, 위치정보 서비스 기술 등 민간 첨단기술의 활용이 주목을 받았음.

우리나라도 민간 첨단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위해 시제품을 개발 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검증하는 신개념기술시범, 신속시범획득, 신속 연구개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국방기획관리제도(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Execution Evaluation System)에 기반 한 기존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 아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기술 진부화 등의 문 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었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현 정부에서는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과학기술발달 속도를 고려하여 기존 획득절차와 차별화된 새로운 획득절차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러한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무기체계 획득 절차와는 별개로 연구개발, 시험평가, 양산을 통합 수행하여 AI·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안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제3항).

아울러 군이 민간의 첨단기술이 활용된 무기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온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방산업체 등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및 제21조제5항신설, 안 제3조제1호 및 제17조제1항).

법률 제 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의 결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① 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의 결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 등에 관한 연구(이하 "사전개념연구"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

가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사전개념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개념연구의 수행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있는"을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3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을 구성·운영할수 있다.
 -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 군
 -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

- 3. 제21조제5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발시험 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제4항의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위력개선사업"이라 함은 1.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 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ㆍ성 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 ----- 시설의 설 치 등을 행하는 사업, 신기술 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 다. 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 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신 설>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 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동참 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 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 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의 결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신 설>

제16조(소요의 수정) ① 합동참모 제16조(소요의 수정) ① -----의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조의2제1항-----소요를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① 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 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 른 소요의 결정이 신속하고, 합 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에 무기체계 등 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 용성능에 관한 연구(이하 "사 전개념연구"라 한다)를 수행하 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 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 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 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사전 개념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의 수행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제1항 또는 제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 ② 기체계 등의 소요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 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 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 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 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 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 산업육성효과, 기술적 · 경제적 타당성,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 한 조사 · 분석을 한 선행연구 (先行硏究)를 거친 후 방위력개 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 야 한다. 다만, 전시 · 사변 · 해 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 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	
	<u>제15조제1항 또는 제15</u> 조의2제 <u>1항</u>
_	·
	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 법 등) ①
-	
-	
-	
-	
-	
-	
_	
_	
_	
-	
-	
_	
_	
_	있거나
ス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
<u> </u>	<u>업을 실시한</u>
_	

<신 설>

- 제17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활용을 위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 ·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3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 팀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 군
 -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

 출품질원
 - 3. 제21조제5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21조(시험평가)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중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 2. (생략)

④ (생략)

<신 설>

⑤ ~ ⑦(생 략)

<u>다.</u>

제21조(시험평가)	1 • 2	(현행과
같음)		

(3)	 	 	 	
	 	 	 	 - –

다만,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 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2.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 ⑤ 국방부장관은 제17조의2제1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 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입증시험으로 제4항의 시 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 <u>⑥</u> ~ <u>⑧</u> (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